[별표 6] <신설 2005.12.31>

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(제83조의4제9항 및 제10항관련)

1. 시설기준

시 설 별	시 설 기 준	적용대상
교육보조재료 창 고	교재·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	대대급 이상 훈련장
강 당	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터(중대급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) 이상의 강당	중대급 이상 훈련장
간이목욕장 시 설	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목욕장	대대급 이상 훈련장

2. 기준면적

(단위 : 제곱미터)

부대 편성 인원 / 훈련장시설	중대·대대	대대·연대	연 대	여 단	용 도
	800명 이하	801명~2,400명	2,401~5,000명	5,001명 이 상	
전술교육장	15,000	30,000	30,000	45,000	철조망·장애물 및 총검술교육시설을 갖춘 각개전투·분대전술·수색정찰 교육장소
사 격 술 예비훈련장	3,600	7,200	10,800	10,800	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
사 격 장	1,650	2,475	3,300	3,300	사격장소
기초훈련장	2,500	5,000	7,500	7,500	제식훈련, 총검술·소화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소
계	22,750	44,675	51,600	66,600	

비고

사격술 예비훈련장·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(사격술 예비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장을 포함한다)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면적에 포함한다.